



내년부터 해운·관광업도 수출기업으로 분류

산자부 외화획득 기업 무역금융지원 받도록

내년부터 해운·항공업 등의 운수사업과 관광 사업도 수출 기업의 범주에 포함돼 무역금융지원 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화획득 실적이 많거나 수출실적 확인이 가능한 운수·관광업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정하는 용역 서비스의 범위에 추가해 무역금융 지원 및 무역의 날 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업체와 물자 수송 등을 통해 외화를 획득한 운수업체들도 앞으로는 수출 기업으로서의 혜택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관광·운수업은 외화를 획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상품에 들어가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범위에 추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국산품) 또는 관세환급(수입품)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는 원료와 시설기재, 제품 등 유체물을 한정돼 있어 무체물은 수출상품에 들어가더라도 관련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해양부, IMO 해양안전 수감대비 사전진단 완료 국제협약 국내법 미수용 등 2007년 수감 예정

해양수산부는 내년 9월부터 실시 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MAS)에 대비해 국내 해양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사전진단을 이달 초에 완료하고 미비점 개선작업 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 사전진단에서는 국제협약에서 정부에게 부과한 700여가지 의무사항의 국내법 수용과 이행 실태, 정부권한 대행체제 및 해양안전관련 조직·인력의 적정성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진단 결과, 국제협약상 정부의무의 국내 법령 미수용, 정부권한 대행기관과의 대행협정 미체결 등이 지적됐다. 권고사항으로는 해양안전관리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중인 품질경영시스템(ISO)의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ISO의 국내 해양안전관리체제 수용에 대해 해양부는 장·단점 분석 및 관련부서와 논의를 거친 결과 잠정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해양부는 또 사전진단에서 도출된 미비점 중 법령 제·개정 작업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오는 2007년 초 예정인 감사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